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행정안전부 장관 (대통령경호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, 경호구역 내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운용 근거 명확하게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통령집무실·관저 등에 대한 부도 삭제(안 제4조)

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는 경호구역을 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, 하위법인 시행령 제4조에서 부도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함.

나. 경호업무 지원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운용 근거 명확화(안 제3조의 3 제3항)

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 배치된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 운용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인력·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. 단,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경호구역) 처장은 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대통령집무실·대통령관저·각종 행사장·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위해요소,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.

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”를 각각 “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(제1호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의3(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인력·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. 단,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</u>
제4조(경호구역) ① <u>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경호처(이하 “경호처”라 한다)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·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, 그 범위는 부도(附圖)와 같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대통령집무실·대통령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장·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의 성격, 경호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지</u>	제4조(경호구역) <u>처장은 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대통령집무실·대통령관저·각종 행사장·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위해요소,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.</u>

정한다.

제3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처장은 다음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
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
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
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
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
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
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
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
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조회 또는 협
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
은 그 조회 또는 협조 업무를
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
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
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
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
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
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
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3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-----

----- 제18조에 따른
민감정보(제1호는 제외한다)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제
18조에 따른 민감정보(제1호는
제외한다)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	
연 락 처	(02) 770 - 5511